

모두의 미래, 함께하는 꿈!
Toward the Future, Dreaming Together!

2027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 입학원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별도의 모집요강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hak.pknu.ac.kr)에서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입학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제출서류 표지」를 출력하여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한 후 서류제출 기한 내[**2026. 7. 14.(화)**] 국립부경대학교에 도착하여야 합니다.(다만, 등기우편인 경우 서류제출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입학원서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서는 지원자가 몰려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입학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교협 심의결과에 따라 모집단위 및 인원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부경대학교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목 차

○ 입학원서 접수 안내사항

1.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에 대한 유의사항 ····· 1
2. 입학원서 접수 ····· 2
3. 입학원서 접수 유의사항 ····· 2
4. 서류제출 유의사항 ····· 2
5. 입학원서 전형료 ····· 3
6. 기타 유의사항 ····· 3

Ⅰ. 전형일정 ····· 5

Ⅱ. 모집인원 ····· 6

Ⅲ. 지원자격 안내

1. 재외국민(2%이내) ····· 7
2. 전 교육과정 이수자 ····· 7
3. 북한이탈주민 ····· 8

Ⅳ. 지원자격 심사 관련 공통 안내사항 ····· 9

Ⅴ. 전형방법 및 선발 ····· 10

Ⅵ. 제출서류

1. 전형별 제출서류 안내 ····· 12
2.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13

Ⅶ.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 ····· 15
2. 합격자 등록(온라인 문서등록) ····· 15
3. 등록금 납부 ····· 15
4.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온라인 문서등록 포함) ····· 15
5. 추가 합격자 발표 및 등록(온라인 문서등록) ····· 16

[별지 제1호 서식]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원서 ····· 17
[별지 제2호 서식] 지원자 학력사항 종합기록표 ····· 18
[별지 제3호 서식] 보호자 국외 근무(체류)기간 종합기록표 ····· 19
[별지 제4호 서식]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서 ····· 20
[별지 제5호 서식]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 ····· 21

입학원서 접수 안내사항

1.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에 대한 유의사항

가. 복수지원 허용 범위

❍ 재외국민(2%이내)의 경우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가 아니라 수시모집에 지원한 전형을 의미하고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 지원횟수는 입학원서 접수 시간 순서로 6회까지만 인정하며, 6회를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 처리됨

※ 지원횟수는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하며 재외국민(2%이내)와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외 전형도 포함됨

❍ 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6개 전형이내의 복수지원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나. 복수지원 금지사항

❍ 재외국민(2%이내)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및 충원 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지원자는 복수지원 금지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다. 이중등록 금지사항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재외국민(2%이내)와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에 모두 합격하거나, 여러 모집단위에 중복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전형)에만 등록하여야 함

❍ 온라인 문서등록을 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임

※ 합격 후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자는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을 취소함

❍ 대학에 등록한 자가 타 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여야 함

❍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이중등록 등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2. 입학원서 접수

가. 방법: 온라인 접수

나. 기간: 2026. 7. 6.(월) 09:00 ~ 7. 10.(금) 18:00

다. 절차: 표준공통원서접수 서비스를 사용하여 원서접수 진행

입학원서 접수사이트 접속 ➡ **입학원서 작성** ➡ **전형료 결제**

- www.pknu.ac.kr(국립부경대학교) 또는 입학원서 접수사이트
- 사용자 로그인(비회원인 경우 회원가입)

- 온라인 원서접수 유의사항 확인
- 입학원서 작성 내용 확인

- 전형료 결제(간편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후에는 입력 및 선택한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한 후 결제

➡ **입학원서 접수 확인** ➡ **서류 제출 [2026. 7. 14.(화) 18시까지]**

- 입학원서 등 출력

※ 입학원서 접수절차가 완료되어야 출력 가능

- 제출서류 표지를 출력하여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
- 해당자에 한하여 **등기우편(제출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또는 방문 제출

3. 입학원서 접수 유의사항

○ 입학원서 접수는 전자결제(전형료 납부)가 이루어진 후에 완료됨

○ **접수된 입학원서는 수정·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입력요령에 따라 신중히 작성하여야 하며 입력착오,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모집단위 변경 불가)**

○ 입학원서 접수 시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입학원서에 사진을 첨부하지 않거나 타인의 사진 등록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 사진은 우리 대학 입학 후 학생증 발급 시 활용됨<사진크기: 3.5㎝×4.5㎝(300KB이하), 파일형태: JPG>

※ 배경이 있는 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사용 불가

○ 입학원서 접수 후 반드시 입학원서 접수 여부를 국립부경대학교 홈페이지(www.pknu.ac.kr) 또는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입학원서 접수 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hak.pknu.ac.kr) '수험생 인적사항 변경'에 신청**하여야 함

4. 서류제출 유의사항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지정된 기일[**2026. 7. 14.(화) 18:00**]까지 제출서류를 국립부경대학교로 등기우편(서류제출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도착된 서류는 접수 처리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할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 국립부경대학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종합기록표는 원서접수 기한 내[**2026. 7. 10.(금) 18:00까지**]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 입력한 후 출력하여 서류제출 기한 내[**2026. 7. 14.(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제출서류 표지」를 출력하여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한 후 발송하여야 함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다만, 원본을 회신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신용 봉투도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회신용 봉투의 겉봉에 지원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등기우표를 부착하여야 함)

❍ 서류미비, 기재상 착오 및 누락, 주소불명, 모집요강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입학원서 전형료: 100,000원(1단계: 80,000원 / 2단계: 20,000원)

【 입학전형료 반환에 관한 사항 안내 】

▶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다만,「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할 수 있음)

▶ 반환사유 및 금액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납부한 전형료 전액
- 지원자 중 1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2단계 전형료(20,000)

▶ 반환방법: 입학원서에 기재된 환불계좌로 입금

※「고등교육법」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

6. 기타 유의사항

❍ 면접고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영상 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 면접고사 안내, 합격자 발표는 국립부경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은 국립부경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합격여부, 후보순위 및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하여야 함

❍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전형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입학)을 취소함
- 서류 미제출자, 지원자격 미달자
- 지정된 기간까지 면접고사 답변영상을 미제출한 자
- 면접고사에서 최저점을 받은 자(면접과락자)
- 지정된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서류의 위·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본교 및 타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일정기간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함

❍ 입학전형 시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아니함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 **국립부경대학교는 대학 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

○ 지원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 연락처, 전자우편 등

○ 학교정보: 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학교명, 졸업(예정)연도 등

○ 기타정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환불계좌번호, <별지 제1~3호 서식>에 관한 사항, 입학전형료 납부내역 등

▶ **개인정보 제공처: 국립부경대학교 입학본부(교내 타부서에서 아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시 제공할 수 있음)**

▶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사항에 이용(제공)하며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 개인정보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등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함**

○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의 입학, 학사, 등록, 장학, 통계, 취업조사, 학생행사 업무, 산학협력단 연구사업 업무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안내

○ **제3자 제공**: 출신고교, 제출서류 발급기관(진위확인 등), 국세청(입학전형료 세액공제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시 입학원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음**

▶ **보유기간: 10년**

Ⅰ 전형일정

구분	일시	안내사항
입학원서 접수	**2026. 7. 6.(월) 09:00 ~ 7. 10.(금) 18:00**	• 온라인 접수 (국립부경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입학원서 접수사이트)
서류 제출	**2026. 7. 6.(월) ~ 7. 14.(화)** (매일 09:00 ~ 18:00까지) *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지원자 학력사항 기재 및 보호자 국외 근무 기간 기재는 반드시 원서접수 기한 내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 온라인 입력 후 제출하여야 함**
1단계 합격자 발표	2026. 8. 4.(화) 17:00 <예정>	• 국립부경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면접고사	2026. 8. 11.(화) <예정>	• 대상: 1단계 합격자 •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합격자 발표	2026. 8. 21.(금) <예정>	• 국립부경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합격통지서 교부	2026. 12. 18.(금) 17:00 이후	• 국립부경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합격자 등록 (온라인 문서등록)	2026. 12. 21.(월) 09:00 ~ 12. 23.(수) 16:00	•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문서등록 • **기한 내 미등록 시 합격을 취소함**
추가합격자 발표	1차: 2026. 12. 24.(목) 10:00 2차: 2026. 12. 28.(월) 09:00 3차: 2026. 12. 29.(화) 09:00 **4차: 2026. 12. 29.(화) 18:00까지**	• 1차~2차: 국립부경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 3차~4차: 개별통보
추가합격자 등록 (온라인 문서등록)	1차: 2026. 12. 24.(목) 10:00 ~ 12. 27.(일) 16:00 2차: 2026. 12. 28.(월) 09:00 ~ 16:00 **3차: 2026. 12. 29.(화) 09:00 ~ 14:00** 4차: 2026. 12. 30.(수) 09:00 ~ 16:00	•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문서등록 • 기한 내 미등록 시 합격을 취소함
등록금 납부	2027. 2. 10.(수) 09:00 ~ 2. 12.(금) 16:00	• **기한 내 등록금 미납부 시 합격을 취소함**

※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후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바람

※ 문의: Tel 051-629-5600

[서류제출처] 등기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제출

- ㉾ 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미래관(A21) 3층 입학관리과
  ※ **등기우편 제출의 경우 서류제출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II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모집단위별 최대 모집가능 인원
합계			60	
본부	공통	글로벌자율전공학부	1	1
인문사회과학대학	인문·사회	국어국문학과	11	2
		영어영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영어문화·산업전공)		4
		일어일문학부(일본어문학전공,일본학전공)		4
		사학과		2
		경제학과		5
		법학과		3
		행정복지학부(행정학전공,사회복지학전공)		4
		국제지역학부(국제학전공,국제개발협력학전공)		3
		중국학과		1
		정치외교학과		1
자연과학대학	자연	응용수학과	3	2
		물리학과		2
		화학과		2
		미생물학과		2
		과학컴퓨팅학과		1
경영대학	인문·사회	경영학부(경영학전공,회계·재무학전공,관광경영학전공)	10	5
		국제통상학부(국제통상학전공,국제무역물류학전공,국제경영학전공)		5
공과대학	자연	전기공학부(전기공학전공,제어계측공학전공,디스플레이반도체공학전공)	15	5
		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기계설계공학전공)		5
		에너지수송시스템공학부(냉동공조공학전공,기계시스템공학전공,조선해양시스템공학전공)		5
		화학공학과		4
		고분자·화학소재공학부(에너지화학소재공학전공,고분자공학전공)		5
		나노융합반도체공학부(나노융합공학전공,차세대반도체공학전공)		5
		시스템경영·안전공학부(산업경영공학전공,기술·데이터공학전공,안전공학전공)		5
		소방공학과		2
		융합소재공학부(금속공학전공,재료공학전공,신소재시스템공학전공)		5
		건축공학과<4년>		2
		토목공학과		4
		생태공학과		2
수산과학대학	자연	식품과학부(식품공학전공,식품영양학전공)	7	5
		생물공학과		2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해양생산학전공,해양경찰학전공)		4
		수산생명과학부(양식응용생명과학전공,자원생물학전공)		5
		수산생명의학과		2
	인문·사회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해양수산경영학전공,자원환경경제학전공)		5
환경·해양대학	자연	환경공학과	3	2
		해양학과		2
		지질환경과학과		2
		지속가능대기환경학과		2
		위성정보융합공학과		2
		해양공학과		2
		에너지자원공학과		2
정보융합대학	자연	데이터정보과학부(빅데이터융합전공,통계·데이터사이언스전공)	10	3
	인문·사회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언론정보전공,미디어ICT공학전공)		3
	자연	스마트헬스케어학부(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휴먼바이오융합전공)		3
		전자정보통신공학부(전자공학전공,정보통신공학전공)		5
		건축학과<5년>		2
		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인공지능전공)		5
		디지털금융학과		2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3

※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을 지정하며 모집단위별 최대 모집가능 인원 내에서 합격자를 선발함(AX혁신대학은 제외함)

※ 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모집단위는 위 모집단위와 동일하며, 위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할 수 있음

Ⅲ 지원자격 안내

1. 재외국민(2%이내)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내용(정의)
부모	재직조건	• 부모 중 한명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 근무/사업/영업하여야 함
	체류조건	• 부모 중 한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 및 자녀(학생)와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함 - 자녀(학생)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을 배우자와 함께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여야함 * 체류일수 산정시, 소수점 절사
자녀(학생)	재학조건	• 부모 중 한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하여야 함 -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체류조건	• 본인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을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에서 체류*하여야함 * 체류일수 산정시, 소수점 절사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날까지를 각각 1개 학년·1개년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외 재학·체류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국외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졸업예정자는 2027. 2. 28.까지 졸업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함

- 단,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에는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2. 전 교육과정 이수자(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한 자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다만,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인정함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3. 북한이탈주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Ⅳ 지원자격 심사 관련 공통 안내사항

1)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2)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연수, 등은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음(다만,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검정고시 출신자도 인정)

3) 동일 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는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예시】 중복 관련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대체 가능

G11-1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4)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5) 학년(Academic Year)기준이며,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해당국의 학제 등 고려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3학기 또는 4학기 이수를 1년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6) 부모 및 학생의 출입국 관련서류, 국외근무자 재직 관련 서류의 위·변조 등이 확인되면 관계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입학 후에라도 입학을 취소함

7) 복수국적자인 경우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8) 근무기간, 체류기간 및 국외재학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하며, 지원자격 해당기간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국립부경대학교 지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결정함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인정여부는 국립부경대학교 지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결정함

Ⅴ 전형방법 및 선발

1. 구분: 재외국민(2%이내),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2. 전형요소별 배점 및 반영비율

전형 단계	총점	반영 비율
1단계	-	지원자격 적격여부 서류 심사
2단계	200점	면접고사 성적 200점

○ 제출서류를 심사한 후 지원자격 적격자에 한하여 1단계 합격자로 선발함
○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고사를 실시함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3. 면접고사

1) 면접방법: 비대면고사 실시(답변영상 촬영 후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 업로드)
○ 문제공개 및 답변제출: 2026. 8. 11.(화)
○ 면접고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hak.pknu.ac.kr)에 사전 공고
2) 대상: 1단계 합격자
3) 평가방법 및 내용
○ 평가영역

영역구분		문항수	출제범위	배점
Ⅰ영역	전공적성 및 전공이해도	1문항	전공선택동기, 전공수행능력, 학업계획	40 ~ 50
Ⅱ영역	인성 및 품성	2문항 중 택1	가치관, 자아관, 지도자적 자질, 사회성	40 ~ 50
Ⅲ영역	문제해결 능력	2문항 중 택1	문제에 대한 이해력 및 표현력, 논리적인 사고력, 창의적인 해결력	40 ~ 50

○ 면접위원 2인이 지원자 1인을 평가
○ 배점: 기본점수 50점, 최저 120점, 최고 150점
○ 출제범위(과목명):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교과의 전 영역

4. 선발방법

○ 서류 미제출자, 지원자격 미달자, 면접고사 미응시자, 면접고사에서 최저점(면접과락*)을 받은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면접과락: 면접위원 2인에게 평가영역 3문항 모두 최저점을 받은 경우
○ 모집단위별 영역별 배점에 따라 취득한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함

- 총점(200점)에서 각 호수에 따라 최고 20점 ~ 최저 2점까지 감점 적용함

구분 \ 조치사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감점 점수	2	10		16		20			

※ 해당전형 전 모집단위(전체 계열)에 해당함

※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모집단위별로 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부터 성적순에 따라 지원자 모두(불합격자 제외)를 후보순위자로 선발하여 미등록 충원을 실시함

○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동점자 선발기준

순위	내용
1순위	면접고사 Ⅲ영역 성적 우수자
2순위	면접고사 Ⅱ영역 성적 우수자
3순위	면접고사 Ⅰ영역 성적 우수자

Ⅵ 제출서류

1. 전형별 제출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1. 입학원서		온라인 접수 후 출력[별지 제1호 서식]
	2.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국외 재학 학년의 학기 개시일, 종료일을 알 수 있는 학사일정표 제출(School Calendar, 홈페이지 출력·캡처본, 브로셔 제출 가능) ※ 북한이탈주민 지원자 제외
	3.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서		해당자에 한함[별지 제4호 서식]
재외국민 (2%이내)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실제 재학기간(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국내학교 및 재외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국내학교 및 재외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4.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지원자(학생) 기준으로 발급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기간: 중~고교 6년간
	6. 여권 사본(부, 모, 학생)		
	7.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8.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부, 모, 학생)		[별지 제5호 서식]
	9. 종합기록표		온라인 접수 후 출력[별지 제2~3호 서식]
	해당자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국외근무기간 포함) 외국지사설치인증서 또는 외국직접투자신고서	국외파견 재직자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국외근무기간 포함)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현지 취업자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자영업자
전 교육과정 이수자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실제 재학기간(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재외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재외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4.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기간: 초~고교 12년간
	5. 여권 사본(학생)		
	6.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학생)		[별지 제5호 서식]
	7. 종합기록표		온라인 접수 후 출력[별지 제2호 서식]
북한이탈 주민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3.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북한학교 출신자 중 고교졸업학력 인정자 :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고교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대입전형용)

국외 발급 서류 안내

- **국외에서 발행한 각종 공문서 및 공증 문서가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또는 영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발급서류의 경우 학교장 직인으로 갈음함(아포스티유(영사)확인에서 제외함)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는 국가별 처리 여건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문의: 재외동포365 민원콜센터(02-6747-0404)

2.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을 함께 지참하여 입학본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함
- **국내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의 경우 **2026. 6. 1.(월) 이후에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초·중·고등학교 과정 중 국내(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포함)에서 재학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함
- 재직(경력)증명서상 국외근무기간이 연월일까지 명시되어야 함
- 세금납부증명서는 공공기관 발급서류만 인정되며 비과세사실증명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 법인세납부이력 대신 개인세금납부 실적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회사명칭이 표기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부모가 이혼(사망)하거나,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입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부모의 이혼 시
  - 기본증명서(지원자 기준) 추가 제출(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지정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양육권)자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하며, 이혼일 이전까지의 자격 조건은 충족해야 함
  - 부모가 재혼한 경우 친권(양육권)자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함
  - 친권자 지정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친권자와 미거주 시 양육권 확인을 위한 이혼판결문 또는 협의서 제출

  ※ 부 또는 모 사망시
  -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추가 제출(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지원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 제출
-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이중국적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여권 사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여권번호에 기재된 출입국 사실증명서도 모두 제출하여야 함

원서접수 당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최종합격자 추가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2027. 2. 19.(금) 18:00까지**

나. 제출서류: 고교 졸업증명서 1부(**고교 졸업일 이후 발급**)

※ 국외 고교 졸업증명서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다. 제출방법: 국립부경대학교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라. 제 출 처: ㉾ 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미래관(A21) 3층 입학관리과

Ⅶ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

○ 일시
- 1단계 합격자: 2026. 8. 4.(화) 17:00(예정)
- 최종 합격자: 2026. 8. 21.(금) 17:00(예정)
- 추가 합격자: 전형일정표 참조

○ 방법: 국립부경대학교 홈페이지(www.pknu.ac.kr)에 공고

○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하지 않으므로 지원자는 국립부경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2. 합격자 등록(온라인 문서등록)

○ 합격자 등록기간: 2026. 12. 21.(월) 09:00 ~ 12. 23.(수) 16:00

○ 추가합격자 등록기간: 전형일정표 참조

○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hak.pknu.ac.kr) **온라인 문서등록에 로그인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문서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합격을 취소함(등록확인 예치금 납부없음)**

○ **다수의 대학 및 모집단위에 중복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 및 모집단위에만 등록하여야 함**

○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중등록으로 인하여 해당 대학 입학이 모두 취소됨**

3. 등록금 납부

○ 기간: 2027. 2. 10.(수) 09:00 ~ 2. 12.(금) 16:00

○ 방법: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등록금 납부고지서에 지정된 은행)

○ 고지서는 국립부경대학교 홈페이지(www.pknu.ac.kr)에서 개별적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장학금 수혜 등으로 납부할 등록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은행의 수납절차를 거쳐 본인의 등록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미등록자로 처리됨**

※ 온라인 문서등록으로 등록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등록금 미납 시 합격이 취소되므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4.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온라인 문서등록 포함)

○ 기간: 별도 지정

○ 절차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 사이트 접속 →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

- https://iphak.pknu.ac.kr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사용자 로그인

- 본인인증 사항 입력
- 등록포기 및 환불사유 입력

→ **환불처리 내역 확인** → **입금 확인**

- 환불처리 진행경과 확인 (환불신청중→환불처리중→환불완료)

- 환불완료 확인 후 입금내역 확인

5. 추가 합격자 발표 및 등록(온라인 문서등록)

❍ 일정 및 발표방법

구분	추가합격자발표	추가합격자등록(온라인 문서등록)	발표방법
1차	2026. 12. 24.(목) 10:00	2026. 12. 24.(목) 10:00 ~ 12. 27.(일) 16:00	국립부경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2차	2026. 12. 28.(월) 09:00	2026. 12. 28.(월) 09:00 ~ 16:00	
3차	2026. 12. 29.(화) 09:00	2026. 12. 29.(화) 09:00 ~ 14:00	개별통보(유선)
4차	2026. 12. 29.(화) 18:00까지	2026. 12. 30.(수) 09:00 ~ 16:00	

※ 추가 합격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국립부경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 추가 합격자는 국립부경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합격여부 및 후보 순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 **추가합격대상자에게 3회까지 통화를 시도하며 연락두절 등으로 추가합격 통지를 할 수 없을 경우 추가합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hak.pknu.ac.kr) **온라인 문서등록에 로그인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문서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합격을 취소**함(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없음)

❍ 입학원서 접수 후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수험생 인적사항 변경'에 신청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원서

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험번호	

전형명	재외국민						지원자격								
단과대학							모집단위								
인적 및 학력사항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성별		사진		
	주민등록 번 호							-							
	출신고교														
	고교졸업(예정)일	년 월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 소														
추가 연락처 1											※ 추가합격자 발표 등에 활용되며 연락가능한 가족의 휴대폰번호로 최대 3개 모두 기재 요망 ※ 국내 연락처 1개 이상 기재 필수				
추가 연락처 2															
추가 연락처 3															
환불계좌				은행명							예금주 성 명				

SAMPLE
온라인 입력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

※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우편배달 사고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별지 제2호 서식】

지원자 학력사항 종합기록표

단과대학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지 원 자 격 구 분							
① 재외국민(2%이내)				②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지원자 학력사항 기재[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까지 순서에 의해 수학한 학교를 모두 기재]

학교명	재학기간		학교소재지		국내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학년, 학기에 줄(<----------->)로 표시																					
	기간	재학년수	국가명	도시명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총 재학기간	년 개월	국외 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국내 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SAMPLE
온라인 입력

이상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 . .

지원자:

【별지 제3호 서식】

보호자 국외 근무(체류)기간 종합기록표

단과대학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보호자 국외 근무(체류)기간 기재(학생의 국외학교 재학기간에 부모가 국외에서 근무(체류)한 기간을 기재)

구분	국외 근무(체류) 기간		소재지		보호자의 국외 근무(체류)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학년, 학기에 줄(<------->)로 표시																									
	기간	근무(체류)연수	국가명	도시명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父) 성명 ( )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총 계	년 개월																												
모(母) 성명 ( )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총 계	년 개월																												

SAMPLE
온라인 입력

이상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 . .

지원자:

【별지 제4호 서식】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서

수험번호		성명	
모집단위		지원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사유를 작성해주시기 바람
-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

❍ **증빙자료 제출목록 :**

위에 기재한 사항은 틀림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기재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 (인)
본 인 : (인)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25. 5. 30.> (앞쪽)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약칭: 사실증명신청서, 약호:A322)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Free online application available at the government website (www.gov.kr) for the issuance of your own Certificate of Fact. Those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will be required to present only their ID cards without having to complete this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notes on the back page.)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 ) copy(ies)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통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copy(ies) [ ] 외국인등록 열람 ( )건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 신청 여부 (국민만 해당) * This field is only for Korean citizens.	[√]포함 [ ]미포함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 이력 포함 여부, 체류지 영문표기 여부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umber), name, address or status of sojourn, address in English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성명 변경 사항 Previous Name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Previous Status of Sojourn [ ]포함 Yes [ ]미포함 No 체류지 영문표기 여부 Address in English [ ]표기 Yes [ ]미표기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Departure Record) . . . 부터(from) . . . 까지(to)		
용도 (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국립부경대학교**	생년월일(Date of Birth)
	연락처 (Phone No.) **051-629-5600**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국립부경대학교 입학 관계자**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 /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the Head of ○○ Si·Gun·Gu or Eup·Myeon·Dong / the Head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 임 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년(Year) 월(Month) 일(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Signature or Seal)

210㎜×297㎜[백상지(80 g/㎡) 또는 중질지(80 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Consent f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본인은 사실증명 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hereby consent to the electronic verification of the applicant's required documents, in relation to the exemption of fees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through the shared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by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n case of refusal to consent to the verification by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the applicant must submit the relevant documents in person.

신청인(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complete the shaded sections, and please place a check mark for applicable brackets[ ].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앞쪽 신청인의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전화번호란에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각각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applicants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가.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Where a principal is incapable of expressing intentions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benefits of the principal:

   1)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2)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only when the spouse is deceased and the principal does not have any of those listed in the category 1)]

   나.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a non-Korean principal has permanently left Korea:

   - An employer of the principal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다.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Where a favorable ruling is confirmed in a trial on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here the Certification is needed by financial companies that fall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the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overdue debts, or where there is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concerned (only when a debt becomes overdue or a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allows a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an original due date,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Creditor who intend to receive or access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foreigner concerned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fixed date stamp affixed on the agreement, etc.

   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public interest.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s shall present his/her own ID card and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ente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ID card (or a copy) of the authorizing person.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You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or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by submitting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another individual or falsely done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authorization.

7. 국민은 1961.1.1.부터, 외국인은 1979.1.1.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가능합니다.
   Records on this certificate only cover the entry/departures from January 1, 1961, for Korean nationals and from January 1, 1979, for Foreigners.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